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55)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3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7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6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39)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

### 상정된 안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	3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	3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	3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	3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	3
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	3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	3
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	3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3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55) .....	3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2) .....	3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4) .....	3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34) .....	3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74) .....	3
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62) .....	3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0) .....	3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0) .....	3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39) .....	4
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	28
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	28

---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	28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 .....	28

---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55)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2)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4)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34)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74)
  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62)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0)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0)

##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39)

(10시03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찰청 이호영 차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준수 기획조정관께서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관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도검 등 소지자의 정신질환과 같은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등 총 18건의 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혐오표현이나 폭력행위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나, 이것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혐오표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신설하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이러한 반복적인 혐오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대상을 향한 멸시·모욕과 같은 적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폭력적 행위 선동이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영상 등의 재생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

금지사항으로 추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신고한 목적 등의 범위를 뛰어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오에 관한 입법례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법된 이태원 참사 피해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하나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나입니다.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주거지역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제한 사유에 소음·진동·혐오표현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 주거지역을 소음·혐오표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혐오표현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사항 이것은 법 문언, 문장 표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소음·진동, 혐오표현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상 그 밖의 방법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가 배제되는 그런 오해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법문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화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권영세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님 안은 현행 대통령령 기준보다 완화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률에 규정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만 집회 현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현재의 시행령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먼저 2쪽에 있는 가,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의 반복적 혐오표현, 폭력 행위 선동 등 금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집회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나, 집회·시위 금지·제한 사유 추가와 관련해서는 이 역시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쪽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다양한 집회 현장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대의견 말씀드립니다.

일단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늘 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21대에서도 발의됐던 내용이랑 동일한데 그때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최종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협오표현을 보면 개인 혹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협오표현을 차별과 연관된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좀 부정확한 규명이기도 하고요.

또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조를 보면 협오표현 대응은 개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집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회 개인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권리 그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해외의 여러 추세들을 보면 협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협오표현 금지 조례 등의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항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동의하고요.

다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점은 좀 고민이 들어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라의 형사처벌 강화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사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적절한 시행령으로 인해서 집회의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들이 만연한데 이렇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시민의 저항권들 그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혐오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고 또 없어져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에 보면 혐오표현이라는 정의와 금지 행위가 더욱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어떤 법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응하는 입법인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또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혐오표현 부분에 대한 걱정만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과 비교해 볼 때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안을 소음·진동, 혐오표현만 가지고 제한했는데 이걸 보면 기존 법령의 제한 범위를 더욱 축소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특정 행동만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또한 반드시 이게 필요한 개정인지에 대한 더욱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규정하면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탄력적인 집회 대처를 위해서는 법령보다 아까 보니까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전문위원님 측에 묻겠는데 이게 혐오표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이 법률의 취지가?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합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집회 자체하고 혐오표현 그 행위 자체하고 두 가지를 지금 분리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하는데 이 법에 그러니까 무슨 혐오표현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해서 사전에 집회신고 허가를, 집회신고를 수리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정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금지 사항에, 금지 사항이 예측이 된다고 해서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서 집회를 금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추상적인 표현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 이게 집회 중에, 현실적으로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혐오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경찰에서 그 발언 중지를 명령할 수가 있나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주최자 준수사항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당장 현장에서 제지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저희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소음이 심할 때는 확성기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지 만……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걸 확성기를 가지고 혐오표현을 있다고 해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걸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이지요, 강제 조치?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없는데 그런 소음 기준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태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나면, 정해지면 소음기 반납을 명하는 것과 똑같이 혐오표현의 중지도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그건 현장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음 정도 데시벨 이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사생활의 평온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판례나 또 학계 의견이거나 관련해 가지고 이 규정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다거나 어떤 비판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저희들이 사실상 사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걸로 입건하거나 수사를 한 경우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규정을 보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혐오는 사생활 표현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에 불과하고 여기 검토의견의 세 번째 보면 ‘반대해석상’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사항들이 약간 몰각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판례나 여러 가지 하위 법 규정으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개정안으로 잘 필요는 없고 사생활의 평온 이 부분을 기준 유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사실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집회·시위입니다.

우선 가향을 보면 혐오표현 정의 신설을 했는데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 근데 집회·시위에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가 나올 수밖에는 없고 집회·시위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혐오표현 규정에 넣어 버리고 나항에서 금지를 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이런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또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행의 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고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명확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든 시행령에 규정되든 서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각 장소별로 또는 시대 상황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 적용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음 기준은 가급적이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심각하게 아파트 밀집 단지에서 밤에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준 자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보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 정히 필요하다면 이번 개정안 취지 말고 법에서 최소한의, 본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너무 낮은 소음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법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라항의 범정형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님의 개정안에 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 징역형의 처벌이 나가는 예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벌금형이 기준이 될 텐데 5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물가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전혀 통제력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충분히 정황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나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이나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정말 법질서에 반하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통제력은 있어야 되는데 50만 원 벌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통제력이 없는 정도 수준이라서 조금은 상향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가령 전 대통령의 주거지 또는 현 대통령의 근무지 이런 주변에 가서

반복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와 또 개인 프라이버시의 자유 이런 걸 다 절충을 이루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은 특히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정의나 양태 이거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면…… 우리 정보국장님, 그거 맞지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중간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혐오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거 맞지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이상식 위원 실무적으로 저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경찰에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정말 우리 윤건영 의원이 집시법 관련해 가지고 집회 중에서 이런 혐오표현과 관련된 걸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상식 위원 아니라는 게 아니고……

○김종양 위원 집회·시위에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보장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넣었다는 게 재미가 있고.

사실 집회·시위라는 거는 집회·시위 중에서 뭐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또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꼭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적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집회·시위라는 거는 매번 이야기하듯이 집회·시위의 어떤 기본권은 보장돼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이 사실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신고제로 지금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혐오표현까지 적시한다는 거는 또 약간 좀 추상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집시법에 적시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게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집회·시위 소음과 관련해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사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 행복추구권도 있고 통행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권의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집회·시위로 인해서, 물론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좀 그걸 이해해 달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 전방 지역에 계신 분들, 북한의 불법적인 소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유는 적절치 않을지는 몰라도 소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같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매일, 거의 매주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

혀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 소음 초과에 따른 처벌 양형 기준이 5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몇 년 전에, 엄청 오래전에 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물가가 얼마나 많이 인상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조금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은희** 예.

○**김상욱 위원** 정책기획관님, 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아마 전직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서 일어나는 시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여러 법률로도 개별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이나 또는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짧은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불법·범법자가 있다면 지금 현행 시행 중인 개별 법률로 적용 가능할 텐데 인지도로도 가능할 것이고 고소·고발로도 가능할 것이고 관련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시행되고 실제 문제없다면 이 법은 우리가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법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상식 위원** 지금 근데 나중에 사후에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제지하는 게 문제잖아, 제지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정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타 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집회·시위와 관련된 거는 집시법이 최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회·시위에서의 언행은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나, 우리가 무슨 의견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위원장 조은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는 계속심사로 그냥 남겨 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집회에서 벌어지는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모욕죄나 이런 걸 적용하면 지금 현재 이 법이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김상욱 위원님의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소음과 데시벨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의 소음 기준이 일상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일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주거지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저는 광장을 적극적으로 열고 그렇게 집회·시위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찰에서 한다면 주거지에 대한 소음 부분의 피해는 저는 지금보다도 특별한 추가적인 입법 없이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거지에서 집회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그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일 것이고 소음 기준에 대한 입법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가, 나, 다, 라 쪽에 각 항별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계속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가,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2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 10페이지에 교통안전지표 조사 및 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경찰청장 등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적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과적 운전으로부터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화물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점검 결과,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관련 도로관리청의 계측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 없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여서 도로교통법의 관련 제39조 개정의 필요성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박성훈 의원안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김종양 의원님 안은 시·도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므로 김종양 의원님 안과 같이 시·도경찰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39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동조 제6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법령에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제6항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관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나입니다.

교통안전지표 조사 및 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조사·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등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제고를 위해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를 위탁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서요. 교통안전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작성하고 시장 등이 교통안전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하는 주체가, 대상이 각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안전지표를 활용하는 주체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것을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등’이라고 해 놓으면, 현재 시장 등은 약칭된 용어인데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장 등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든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먼저 2쪽, 가.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쪽, 나. 교통안전지표 조사 및 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채현일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했나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시행령에?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 적재중량 이것은 계측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법에 현재 정해져 있는 그 근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재산상 또 영업비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렇게

약간 좀……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현재 국토부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재중량에 대해서 계측기를 활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계측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국토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김종양 위원** 이게 과태료 처분이 국토부하고 지금, 국토부는 사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주 상향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그런데 총 도로의 파손을 도로법은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이상이 되어야만 도로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면 그 이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저희는 그것과 다르게 도로의 운행상의 안전이기 때문에 110%를 넘거나 길이가 10%를 넘거나, 좌우로 이렇게 10%를 넘는 그런 운행상의 안전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예.

○**채현일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식 위원** 이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 같네요, 입법의 미비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소위 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그게 한병도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페이지의 김종양 의원님 안입니다.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사하는 것에 관해서 현재 시행법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개선을 위해서 개선 입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보시면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종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경비업자에 대해서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부분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에 반한다 이런 요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념성’이라는 용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어떤 것에 몰두하는 성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경비업 본연의 업무를 훼손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일정 범위의 비경비업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안의 차이는, 김석기 의원안 먼저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설경비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정 범위의 비경비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한병도 의원님 안과 김종양 의원님 안은 경비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런 허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업무 외에도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그리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이러한 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범위의 비경비업무를 허용할 때 그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쟁점이 될 텐데요. 전념성이라는 용어가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또 한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뜻을 좀 풀어서 취지에 맞게 김석기 의원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비경비업무의 허용 범위는 각 경비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 경비업 중에 시설경비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업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헌이 제기된다면 동일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비업 전반에 대해서 예외적인 비경비업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정도에 관한 쟁점인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는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종사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일정 범위의 비경비업무 자체를 허용하게 된다면 경비업, 그래도 그 이상 위반했을 때 필요적 취소하는 부분은 유지하더라도 위헌성, 헌법재판소의 위헌 우려는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종양·김석기 의원님 안은 필요적 취소를 유지하는 안이고요. 한병도 의원님 안은 나아가서 비경비업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필요적 취소를 임의적 취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경찰청은 임의적 취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 완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에 교육장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장 요건을 제외시키는 것 이고요. 경비원 배치 허가 대상 경비업무에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사전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비업 법인 허가에 교육장 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러한 충실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경비업법에 따라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비원 배치 시 사전 신청 허가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부칙에,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면 경비업의 허가 취소에 관련된 조문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먼저 3쪽, 가.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사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쪽, 나.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 완화는 최근 경비원의 직무교육의 대부분이 온라인 또는 배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교육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 삭제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비원 배치 허가 대상, 경비업무 추가에 대해서는 집단민원현장에 신설된 혼잡·교통유도경비원도 배치될 수 있어서 기존 시설경비·신변보호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사전 배치 허가가 필요하므로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3쪽 부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현법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애초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경비노동자들의 너무 큰 과로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했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경비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애초의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감시·감독직 제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이 관련된 어떤 대안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들까지 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아직 시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의 논의 까지 교섭단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갑질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비원의 경

비 외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속제 폐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또 함께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는 경비업의 허가 취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전념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폐널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직 안 했나요? 뒷부분에서 하나요?

○**이상식 위원**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임의적이라는 게 지금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좀 다른 주장…… 임의로 하는 것은, 강제적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상 문제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용혜인 위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폐널티를 좀 줄이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이상식 위원** 폐널티를 줄이는 게 임의적인 걸 줄이는 것 아닙니까? 경비, 그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라고 저는 문맥상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기영** 소위 자료 19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별표 4를 보시면 임의적 취소에 대한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게 행정 당국에서 정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1차 위반 시……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경비업체 종사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기영** 맞습니다. 경비업자가 취소를 바로 당하지 않고……

○**용혜인 위원** 경비업자한테, 업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폐널티가 줄어든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용혜인 위원님이 그런 뜻이라면 그게 임의적인 것, 한병도 의원안이지요.

○**용혜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부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 아, 거기에 부동의한다고요?

○**용혜인 위원** 예.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경비업무 종사자 허용 범위를 넘어서 비경비업무 수행할 때 경비업 허가 필요적 취소는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경비원?

○**정동만 위원** 예, 그래서 허가취소 문제 이것은 임의적 취소로 완화해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령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법령 개정 이후 경비업 허가·허가취소에 관해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양 위원이 말씀하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채현일 위원**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헌법불합치가 됐다 하더라도 약간 검토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숙성해서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10페이지에 보면 김종양 의원님 법안 중에 교육장 요건 제외 관련해 가지고 검토의견은 좀 다르게 보신 거잖아요, 일반·특수경비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단 경찰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특수경비원에 대한 충실한 직무교육의, 이런 법안 내용을 완화를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없나요? 검토의견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서, 맞나요?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현재 대부분의 교육 자체가 온라인 또는 배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 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경비업자들의 이익이 아니고 경비원들, 그분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범죄예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가 필요적 취소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될 때는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경비업무의 본질적인 업무를 해손하지 않는 그리고 경비업무와 현실적으로 충분히 병행한다고 통념적으로 가능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겠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적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실제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실제 경비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경비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너무, 헌법재판소 결정도 났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유예하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 경비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라고 봐야 될 건데 이분들의 이익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수정을 하더라도 빨리 이런 것은 개정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원장 조은희**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후에 저희가 다시 속개를 하니까 정부 측에서는 용혜인 위원님과 채현일 위원님한테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심사하는 게 어떨까요?

○**용혜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검토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경비 외 업무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두지 말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

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조금……

○채현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이게 사실 초단기계약 같은 실질적인 고용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쪽에서는 경비원들의 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고용 안정의 문제가 있어서 이상식 위원님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건데 이게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시행령으로 갈지 그것은 더 논의해야 될 문제 같은데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소위원장 조은희 검토해서 두 위원님은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검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법에서도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식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이게 개념이……

○이광희 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이상식 위원 오후에 다시 하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예, 이 법안이……

○김종양 위원 하여튼 정부 측에서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조은희 다음으로 미루기보다 오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충실히 설명 자료를 만들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배포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2022년 12월 27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검 등 신규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총포에 대해서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스밸사총은 총포의 종류 중 하나로 이미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것은 길기 때문에요 가 끊고 나 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항에 대한 검토의견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서기영 예, 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8페이지입니다.

도검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검 등의 소지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소지허가자의 결격사유 발생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3년 또는 5년으로 마련하고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주기를 소지허가 갱신기간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검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갱신제도 도입의 기간에 관해서는 국민의 부담과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 총포의 갱신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도검 등의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총포·도검의 차이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국민의 부담과 행정비용을 고려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도검 등으로 인해서 많은 위해,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부담과 행정비용을 감안해 주자는 이야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국민의 부담에 그 국민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총포와 도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모경종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5년에 해도 될 것을 3년에 한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좀…… 저도 도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의 부담이나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나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범죄예방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포의 경우에 3년의 갱신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수료 3000원에서 5000원을 징수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단서 등의 비용이 3만~1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종양 위원** 갱신할 때마다 그러면 거의 한 5만~10만 원 정도 듣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경찰서에도 찾아가야 되지요?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국민 전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총포와 도검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건데, 총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총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총포와 도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광희 위원** 모경종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를 없애고 완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관련된 규제라고 보고 저는 모경종 위원한테 설득 당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3년으로 규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동의합니다.

○**이상식 위원** 정부에서 동의한다는데……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14페이지, 다입니다.

결격사유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강화는 결격사유 추가와 결격사유 기간 강화가 있는데요. 먼저 서일준 의원안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의원안을 보면 제안이유에는 ‘집행유예 종료 후 5년이 결격되도록’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작 법안에서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검토하자면, 먼저 집행유예 종료 후 5년의 결격기간을 두면 현행 법이 이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 3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 일반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 종료 후 5년의 결격기간을 두면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 내용대로 집유 기간만 결격시키는 것은 모든 범죄 일반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의 해당 유예 기간 동안에 결격시키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모경종·임이자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결격기간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죄 일반, 모든 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 총포화약법을 위반 시 벌금형은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대범죄로 열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들, 상해·폭행죄 그리고 아동 강간에 관한 특강법…… 죄송합니다. 그게 청소년 보호법이고요. 특강법의 각 호의 범죄, 이러한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 중대범죄 스토킹범죄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모경종 의원님과 임이자 의원님 안은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복적·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총포 등에 접근하기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격기간의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격기간 강화는 방금 제가 표에서 설명드렸던 소위 일부 중대범죄라고 제가 지칭한 그 범죄들에 대해서 현재는 결격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모경종 의원님은 10년과 7년…… 10년과 7년의 차이는요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서는 10년, 벌금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7년 이렇게 상향하자는 내용이고요. 임이자 의원님 안은 이것을 20년·10년으로 상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구분을 검토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마약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운송사업을 20년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결정했던 그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렇지만 현행법이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모자보건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아동학대 이런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산후조리도우미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을 20년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입법례 또한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개별 일부 중대범죄를 전체적으로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상해·폭행죄 같은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나 아동·청소년 강간범죄 등은 법정형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좌측의 표를 보시면 법정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해서 그룹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해·폭행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범죄단체조직죄라든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도 포함해서요 이런 범죄는 좀 더 중대하게 취급을 해서 모경종 의원님 안대로 10년·7년으로 상향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일괄 5년이 아니고?

○**김종양 위원** 일괄 5년으로 해 놨는데?

○**전문위원 서기영** 스토킹범죄가 지금 표, 자료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10년 그룹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먼저 14쪽의 결격사유 추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5쪽, 결격기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범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특정강력범죄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결격기간 10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상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실형,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결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기본적으로 총포나 도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무기고요. 말 그대로 무기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수정안에서 낸 범죄 유형별로 법정형이 나눠지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나눠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단순 스토킹도 무기가 주어지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단순 스토킹범죄가 법정형이 낮다고 해서 총포나 이쪽에 대해서 결격사유 기간을 줄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총포나 도검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주장하신 안대로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분들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미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규제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경종 의원님 안에 일부 수정을 해서 금고든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전부 다 종료 후 10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개정안에 관계없이, 그렇지요?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김상욱 위원** 선거법은, 선거법이라 하더라도……

○**이상식 위원** 사실상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는데 업무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소위원장 조은희** 김상욱 위원님이 굉장히 강력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모경종 의원안이 적당해 보입니다.

○**이상식 위원** 10년·7년.

○**김상욱 위원** 저는 10년·1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이 무섭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일단 이번에는 10년·7년으로 모경종 의원안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더, 만에 하나 있을 때는 또 그 이후에, 추후에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미리 예단을 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평가에 의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면 시간이 좀 간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현행 상해·폭행도 구분 두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범죄예방정책과장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번에 신규로 결격사유로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기존에 폭행·상해가 5년·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토킹범죄 법정형이나 폭행·상해 법정형에 비추어 봤을 때 10년·7년으로 스토킹범죄가 결격기간이 설정이 된다면 폭행·상해도 똑같이 10년·7년으로 하는 게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아니, 다른 항이 또 있지요?

○**전문위원 서기영** 예, 계속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라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21페이지입니다. 라번입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무허가 제조·판매·임대·수출입·소지에 대한 법정형을

총포 및 화약류 무허가 제조에 대한 법정형 중에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제외한 총포와 화약류, 무허가 제조에 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와 동일하게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상습범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서기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도 상습범 가중처벌에서도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의견 드립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역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마, 부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25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별칙규정 상향이나 소지허가 심사, 서류제출 등의 규제가 강화되므로 국민의 혼란 방지와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고요. 개신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도검 등에 대해 소지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소지허가 개신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는 개정되는 결격사유가 개정안 시행 후 접수된 허가 및 개신 신청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은 40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지허가 개신과 관련해서는 아까 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상에 보면 개신 대상 무기의 숫자는 3년으로, 이게 5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저희가 소지허가 개신 대상을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식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음은 박정현 의원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27페이지입니다. 가,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약류에 대해서도 총포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안전관리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약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포 안전관리 계획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30페이지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포·도검 등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고 판매소의 구조·시설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개정안에서 형사처벌 기준과 관련하여서 경미한 사항은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면서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두어서 지금 현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위반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형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현행법에서 가장 낮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판매업에 대해서 허가로 하던 것을 신고로 바꾸면 좀 더 판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상식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범죄예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랑은 조금 별개의 의미고 실제 신고는 행정관청이 통지만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이 덜한데 허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하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직접 찾아들고 방문하고 실사를 거쳐서……

○**모경종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업자가 신고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판매업에 대한 허가는 중요 부분이고 지금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구조·시설·설비 관련과 같이 기존의 업자가……

○모경종 위원 구조하고 시설에 대해서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예, 구조·시설·설비 중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해서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자들의 부담을 조금……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를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식 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문위원 서기영 수정의견 박스를 보시면 구조·시설·설비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행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마지막으로 다행 37페이지입니다.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 폐기, 운반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약류 관련 기술상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경종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 관련해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1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바로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

(11시23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9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 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소방청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을 추가하는 사항 등입니다.

소방력을 좀 더 효과적이고 촘촘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2페이지입니다.

쟁점은 하나인데요.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그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와 다른 인구

집단의 질병 및 사망 관련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에 지금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님 안과 이성권 의원님 안이 거의 유사합니다만 규정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식 의원님 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나열을 하면서 ‘등’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들어가면 법률에서 예시한 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데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권 의원님 안은 구체적으로 한정을 하고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성권 의원님 안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성권 의원님 안을 기반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받았으면 정보주체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소방공무원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었던 자를 추가를 하고요.

현재 개정안은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과 소방공무원의 질병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조금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은 단체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소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되면 정기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에 개정안이 입법이 된다면 이런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시설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그 시행일을 어떻게 조정하자는 말씀이실까요?

○**전문위원 서기영** 소방청에서는 2026년 1월 1일 정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2026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용혜인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일일까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김종양 위원** 너무 장기간인데?

○**이상식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랄지……

○**용혜인 위원** 예, 1년 이상이여 가지고 그렇게까지 필요한 일인지……

○**소방청차장 이영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약 9만 3000여 개가 지금 일단 국내에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약 한 306개소가 있는데 전체 일단 대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는 그 해당 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데요. 참고 1에 현행 특별관리시설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 국내 192개소가 있고, 참고 4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공공관리가 강화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강화되는지는 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면 6페이지에 관리감독 주체가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장이 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외에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자체 점검 외에도 한국소방안전원 등 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교육 실시 등의 공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2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강화된 조치가 입법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는 화재·지진·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와 같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고요. 또한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통위의 이행 관련 지도와 점검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중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사유로는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영향을 고려할 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의견을 감안할 때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화재와 관련한 가장 주무 부서이자 기본 부서는 소방청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중요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 소방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다 따로 돼 있습니까? 데이터센터뿐만 아니고 원자력이나 뭐 모든 여러 가지 사회의 중요시설에 대해서 각각 그 특별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화재에 대한 보호를 조치하게 돼 있느냐고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 다 총괄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소방 관련 법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학에서 말하는 중복성, 리던던시(redundancy)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개 부처에서, 그러니까 가외성으로다가 1차 안전장치, 2차 안전장치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복 규제가 다소 있더라도 소방청에서 이런 거는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부처인 과기부하고 데이터센터 관계자들하고……

○**이상식 위원** 이분들이 뭘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보통신 이쪽에만 신경을 쓰지 이분들이 화재에 전문성도 없고 뭘 어떻게 신경을 쓰겠느냐고요, 데이터센터에.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직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인데요. 사실 데이터센터가 진짜 전국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화재 예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 법안의 취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방청의 신중검토 의견을 보고 좀 살펴보니까 망법이나 아니면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화재안전관리의 범위보다 이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화재안전관리의 범위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들이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계 부처, 다른 과기부나 이런 데의 의견보다는 실제로 화재 예방에 집중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부처의 입장으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방에서 볼 때도 망법이나 방송통신발전법보다는 이 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실제로 포함하는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사례를 보면 공항·항만·철도 그다음 대규모 에너지 시설, 소위 국가 기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다 돼 있네.

○**소방청차장 이영팔**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597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은 특별 관리시설물로 편입을 해서 관에서 좀 더 강화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편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넓게, 화재 안전 관리를 더 폭넓게 하는 것이라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게 훨씬 더 화재 안전을 담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김종양 위원** 방금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5972개 여기의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지금 데이터센터는 5972개의 특별관리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과기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 번 더 시설물을……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 같은 관계 부처에서는 소방청이 그걸 안 해 줄 것 같아요.

○**김종양 위원** 아니요, 관계 부처 다음…… 이상식 의원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대하는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상세하게 우리한테 한번 들려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직접 관계부처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설명과 그다음 내용 부분들을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서 접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과기부도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다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김종양 위원** 아니,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5972개에 각 부처에 있는 주요 시설은 다 포함돼 있어요.

○**이상식 위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김종양 위원** 그래요, 맞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상식 위원** 데이터센터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김종양 위원**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전력도 엄청나게 소모하고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김종양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새로운 신종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관계 부처에서는 왜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었는지 그걸 한 번 더 들어 보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야기 들어 보고……

○**이상식 위원** 필요하면 직접 한번 와서, 여기 출석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종양 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들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내일 하시지요.

○**이상식 위원** 내일?

○소위원장 조은희 뭐 내일이라고 이건 꼭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소방청에셔요. 관계 부처랑 좀 협의를 해서 진전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예.

의사결정 제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2소위 법안심사가 경비업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모두 마쳤는데요. 이 법은 오후에 다시 하기보다 내일 심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그리고 경비업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 ○출석 위원(10인)

김상욱 김종양 모경종 용혜인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동만 조은희 채현일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기영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소방청

차장 이영팔